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31호
- 나. 발 의 자 : 이정훈 의원 외 12명
- 다. 발의일자 : 2016. 10. 28.
- 라. 회부일자 : 2016. 10. 31.

II. 제안이유

- 사립초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업료 징수 방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III. 주요내용

- 가.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할 계산으로 함(안 제4조제4항제3호).
- 나. 안 제4조제4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계산함(안 제6조제2항).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8일 이정훈 의원 외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1호로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로 전출입할 경우 학교장이 수업료 산정 및 반환을 일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공·사립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¹⁾ 및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의 수업료는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립학교 중 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일부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²⁾
- 이때 한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학할 경우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나,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징수 및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조례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 그러나 일반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비싼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학생이 실제로 해당 월의 대부분을 일반고등학교에서 지내더라도 해당 월에 특목고 등에 납부한 비싼 수업료의 상당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³⁾
-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료 자율책정고 간 또는 수업료 자율책정고와 일반고 간의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의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도록 수업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수업료 부담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참고로, 공립유치원,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 3)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한 달 중 하루라도 원소속 학교에 다녔다면 한달치 수업료는 원소속 학교 수업료 기준이 적용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참고.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제3호에서는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책임고’)와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을 지급받는 일부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 동 조례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들에 대해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학교 유형별 학생 수 대비 전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은 2013년 2.97%, 2014년 2.57%, 2015년 3.0%로서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학 빈도가 높는데 이와 같이 전학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사고 학생들이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 학생들은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의 수업료는 자사고에 납부하고,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일반고 수업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1] 학교 유형별 학생수 대비 전학생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학생수 (비율)	총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자공고	특성화고
2013	전학	3,225	1,529	790	85	345	476
	전체	334,123	225,493	26,639	14,058	17,165	50,768
	비율	0.97	0.68	2.97	0.60	2.01	0.94
2014	전학	2,811	1,324	662	82	165	578
	전체	320,398	215,311	25,779	13,452	16,164	49,692
	비율	0.88	0.61	2.57	0.61	1.02	1.16
2015	전학	2,894	1,305	786	79	96	628
	전체	308,306	204,931	26,184	12,904	15,177	49,110
	비율	0.94	0.64	3.00	0.61	0.63	1.28

- 한편 수업료의 경우 일반고에 재학하는 학생의 월 수업료는 12만 900원인 반면, 자사고의 학생들은 월 평균 36만 6,639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율책임고의 학생이 일반고로 3월 2일에 전학할 경우,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월할 계산의 방법에 따르면 3월분 수업료 36만 6,639원을 모두 부담하지만, 동 조례안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으로 계산시 1일분 수업료 11,827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분에 대한 수업료 35만 4,812원을 반환받고, 일반고에 11만 7,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월할 계산시보다 23만 7,812원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고에서 자율책임고로 전학시에는 3월분 수업료 12만 900원 중 3,900원을 제외한 11만 7,000원을 반환받고 자율책임고에 30일분 수업료 35만 4,812원을 납부함으로써 23만 7,812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4)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들 수 있으며,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와 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학교는 각각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들 수 있음.

- 따라서 수업료를 월할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더욱 부합하고 공정한 납부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 특히 당초 자사고등의 학교에 대해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사고 및 특목고 등의 자율채정고가 일반고에 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 바, 동 조례안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받는 교육수혜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업료를 실제 재학일수에 따라 징수하도록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자율채정고의 학생들이 일반고로 전학할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학교간 수업료 차액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유치원 (공립)	년 액	396,000	5,200	
	분기액	99,000		
	월 액	33,000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5,300	
	반기액	67,500		

[표-3] 수업료 비교 현황

(기준 ; 2016학년도)

징수방법	일반고 월 수업료(A)	자사고 월 수업료(B)	학부모 부담액 비교		비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학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시	
현행 (월할계산)	120,900원	366,639원 (평균)	120,900원 납부	366,639원 납부	3월 2일 전출입 가정
개선안 (일할계산)			일반고 : 3,900원 자사고 : 354,812원	일반고 : 117,000원 자사고 : 11,827원	
비고			237,812원 많이 납부	237,812원 적게 납부	3월 부담액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가 제3호의 경우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조문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3호의 서두에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교육재정과-24399), 안 제4조제4항제3호가 자체적으로 단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조문의 의미 및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2.]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 타법개정]

제6조(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국립의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국립 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립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 경우에는 구를, 특별자치시 경우에는 읍·면·동을,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에 공립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 읍·면·동을 말한다)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각 국립 고등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립 고등학교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감액) ①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해당 국립 고등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2. 영 제10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학업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이 이 호에 따른 총감면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기간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지난 기(期)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期)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50호, 2016.5.29., 일부개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8호, 2016.3.22., 일부개정]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학금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가 긴절이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 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